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공 보

<http://www.daedeok.go.kr>

선	기관(부서)의 장
람	

제2018-96호
2018. 12. 31.(월)

차 례

규 칙(2)

-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규칙 제866호)1
-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규칙 제867호)4

훈 령(2)

-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일부개정규정(훈령 제434호)17
-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 (훈령 제435호)20

고 시(1)

- 도시계획시설사업(송촌동 상점가 공영주차 전용빌딩 건립공사) 실시계획인가 고시 (고시 제2018-182호)26

공 고(1)

- 도시계획시설사업(한남학생창업클러스터 공사)공사완료 공고(공고 제2018-995호) ..27

공 람									
--------	--	--	--	--	--	--	--	--	--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박정현

2019년 1월 1일

대전광역시 대덕구 규칙 제866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대전광역시 대덕구 기관별 직급·직렬별 지방공무원 정원표(제2조 관련)

※ 엑셀파일 별첨(p.5~p.9)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효율적 조직운영을 위해 기관별 직급·직렬별 정원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직렬별 정원을 조정함(별표).

- 기관별: 구 본청 보좌·보조기관

- 직급·직렬별

▶ 5급 ㄱ 정원: 21명 → 21명 (변동없음)

└ 직렬: 행정 → 행정·사회복지·시설·공업

▶ 8급 ㄱ 정원: 123명 → 122명 (감 1명)

└ 직렬: 운전

▶ 9급 ㄱ 정원: 49명 → 50명 (증 1명)

└ 직렬: 행정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박정현

2019년 1월 1일

대전광역시 대덕구 규칙 제867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구정발전에 혁신적으로 기여한 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민간인 포상을 위해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조례」의 시행에 관하여”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 조례」의 시행에”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자랑스러운 공무원: 연 1회(12월)
2. 모범공무원: 연 2회(7월, 12월)
3. 으뜸공무원: 연 4회(4월, 7월, 10월, 12월)
4. 효행공무원: 연 1회(5월)
5. 2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하는 공무원: 퇴직 당일

제3조제3항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제5호 중 “각종평가”를 “각종 평가”로 하고, “선정되는데”를 “선정되는 데”로 한다.

제3조제4항 중 “제3항의 규정”을 “제3항”으로 하고, “수립 시행하여야”를 “수립·시행하여야”로 한다.

제4조 중 “[별표]의 기준”을 “별표”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심사 선발”을 “심사·선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다음에 의하여”를 “다음 각 호에 따라”로 한다.

제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표창을 수여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공적이 있는 사람으로서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표창의 수여를 의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재직 중 징계처분(불문경고 포함)을 받고 처분종료일로부터 일정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및 징계요구 중에 있는 사람
2. 공사생활을 통하여 직장이나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사람 및 관계 행정기관이 비위사실조사 중에 있는 사람
3. 동일한 공적으로 이미 표창을 받은 사람

제6조제1항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을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 조례」 제10조제2항”으로 하고, “표창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공적심사위원회”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위원회 운영에 관한사항”을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준용 한다”를 “준용한다”로 한다.

제7조제1항 “안전 상정시”를 “안전 상정 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출석위원 2/3이상 찬성 으로”를 “출석위원 2/3이상 찬성으로” 한다.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적심사의결서(별지 제1호서식)
2. 공적심사조서(별지 제2호서식)
3. 공적개요서(별지 제3호서식)
4. 현지조사확인서(별지 제4호서식)
5. 비위사실 유·무 확인서(별지 제5호서식)

6.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 조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
제9조 중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제7조제3항의 규정”을 “제7조제3항”으로 하고,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를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
하여”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로 하고, “별
지 제1호 서식에 의한”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별지 제7호 서식”을 “별지 제7호서식”으로 한다.

제11조 중 “추천권 자”를 “추천권자”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7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포상에 따른 부상 기준(제4조 관련)

1. 상급기관 국·시비 확보 및 행정역량평가 결과 우수 부서 표창

분 야	내 용	시상금 또는 부상
공모사업 등 국·시비 확보	10억원 이상	5,000천원
	7억원 이상~10억원 미만	4,000천원
	5억원 이상~7억원 미만	3,000천원
	3억원 이상~5억원 미만	2,000천원
	1억원 이상~3억원 미만	1,500천원
	5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	1,000천원
	1천만원 이상~5천만원 미만	500천원
상사업비 확보	3억원 이상	5,000천원
	1억5천만원 이상~3억원 미만	4,000천원
	1억원 이상~1억5천만원 미만	3,000천원
	5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	2,000천원
	3천만원 이상~5천만원 미만	1,500천원
	1천만원 이상~3천만원 미만	1,000천원
	1백만원 이상~1천만원 미만	500천원
기관표창	대통령 표창	700천원
	국무총리 표창	500천원
	장관 표창	300천원

※ 일상적인 국·시비 보조사업은 제외

2. 그 밖의 포상

표 창 명	인 원	표창시기	대 상	시상금 또는 부상	비 고
자랑스러운 공무원	1명	12월	공무원	2,000천원	
모 범 공 무 원	2명	7월, 12월	공무원	「대전광역시 대덕구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에 따름	
으 뜸 공 무 원	4명	4월, 7월, 10월, 12월	공무원	예산의 범위에서	
효 행 공 무 원	1명	5월	공무원	예산의 범위에서	
퇴 직 하 는 공 무 원	미정	퇴 직 당 일	공무원	예산의 범위에서	공로패
공 무 원 배 우 자	미정	수 시	공무원 배우자		공로패
그 밖에 부서에서 추진하는 표창	연도별 계획에 따름	수 시	공무원	예산의 범위에서	

공 적 심 사 의 결 서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 유공 표창 대상자로 심의 의결함.

소 속	직 급	성 명	근무연수	추천훈격	수공분야	비 고

20

대전광역시 대덕구 인사위원회

위원별 의견

직 위	성 명	심의결과 적격여부		부적격 사유
		적 격	부 적 격	
위 원 장				
부위원장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별지 제2호서식]

공 적 심 사 조 서

표 창 명

목 적

주요 심사내용

기타 참고사항

심의대상자 인적사항

연번	소 속	직 급	성 명	재직기간	기서훈	공적내용	추천순위

[별지 제3호서식]

공 적 개 요 서

소 속	직위(급)	성 명	근무연수	공 적 내 용

※ 공적내용은 개조식으로 작성

현 지 조 사 확 인 서

1. 인적사항

소속(민간인은 주소)			
직위(급)		생년월일	
성 명	(한 자)		

2. 현지조사 확인내용

- 품 성
- 지역여론(공사생활 등)
- 공적사항(공적내용과 일치여부)

20 년 월 일

<현지 조사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인)

비위사실 유·무 확인서

소 속	직위(급)	성 명	수공분야 (추천훈격)	징계유무 사실확인

20 년 월 일

작성자 감사업무담당 (인)
확인자 감사업무부서장 (인)

[별지 제6호서식]

공적심사위원회 회의록

회의일시

회의장소

참석자 : 위원 명 중 명

※ 불참위원(명)

심사안건 : 건(가결 건, 부결 건)

안건 1 :

안건 2 :

안건 3 :

안건별 심사의결 내용 : 별첨

20 년 월 일

간 사

서명

위원장

서명

공 적 심 사 대 장

연 번	년월일	안 건	심사내용	심사결과	소관부서	결 재	
						서기	간사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구정발전에 기여한 공무원에게 수여하는 정기포상의 인원 및 시기를 적절하게 정비하여 포상의 효율성을 높이고, 그 밖에 현행 규정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포상의 인원 및 시기를 적절하게 정비함(제3조 및 별표).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문을 정비함(제1조부터 제11조까지).
- 포상에 관한 서식을 현실에 맞게 보완함(별지서식).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일부개정규정을 이에 공포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박정현

2019년 1월 1일

대전광역시 대덕구 훈령 제434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일부개정규정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구 본청 보좌·보조기관의 직렬별 지방공무원 정원표(제2조제1항 관련)

※ 엑셀파일 별첨 p.5 ~ p.7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일 중심 조직문화 정착을 위하여 본청 부서의 직렬별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구 본청 보좌·보조기관의 직렬별 정원을 조정함(별표 1).
 - 감사평가실: 세무6급 1, 행정6급 △1
 - 새로운대덕추진단: 행정·사회복지·시설·공업5급 1, 행정5급 △1
 - 회계정보과: 행정9급 1, 운전8급 △1
 - 민원지적과: 행정8급 1, 행정·시설8급 1, 세무6급 △1, 시설7급 △1
 - 도시재생과: 시설7급 1, 행정·시설8급 △1
 - 건축과: 행정6급 1, 행정8급 △1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을 이에 공포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박정현

2019년 1월 1일

대전광역시 대덕구 훈령 제435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
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7호서식과 제8호서식 및 별지 제10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익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 공익신고자의 신분비밀을 보장합니다.
 - 공익신고자 또는 협조자의 인적사항 등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공익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공개한 자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조치가 금지됩니다.
 - 공익신고자등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신분상·인사상·경제적 불이익을 받지 않으며,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공익신고자등은 신변보호조치를 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공익신고자등과 그 친족·동거인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공익신고자등의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공익신고자등의 위법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형벌, 징계 및 불리한 행정처분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 공익신고자 보상제도

구분	지급 대상자	지급 요건
보상금	내부 공익신고자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가 있는 경우 (100만원 초과하는 벌금, 과징금 등)
포상금	공익신고자	현저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구조금	공익신고자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치료, 이사, 쟁송, 임금손실 등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 내부 공익신고자 : 피신고자인 공공기관, 기업, 법인, 단체 등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자, 피신고자인 공공기관, 기업, 법인, 단체 등과 공사·용역계약 또는 그 밖의 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 등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www.acrc.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공익신고 사항 처리절차 유의사항

■ 우리 기관에서 이송한 공익신고 사항 처리 시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사항을 준수하여 공익신고가 적정하고 원활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및 피신고자 보호(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0조 제5항, 제12조 제1항)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습니다.

1. 공익신고자 등의 비밀보장

○ 조사기관등은 조사 중이거나 조사종료 후에도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사항에 대하여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법 제12조 제1항)

가. 공익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여서는 아니됨

나. 공익신고자가 신고를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 및 형사절차에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인적 사항의 기재생략) 및 제9조(신원관리카드의 열람) 내지 제12조(소송진행의 협의등)의 규정을 준용하여야 함

다. “나”에 의하여 보호되고 있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됨

○ 공익신고자등이 동의한 경우에도 신고자의 인적사항등의 공개는 조사·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로 한정해야 합니다.

2. 공익신고 처리 시 피신고자 보호

○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결과 공익침해행위가 발견되기 전에는 피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포함한 신고내용을 공개해서는 아니 됩니다.(법 제10조 제5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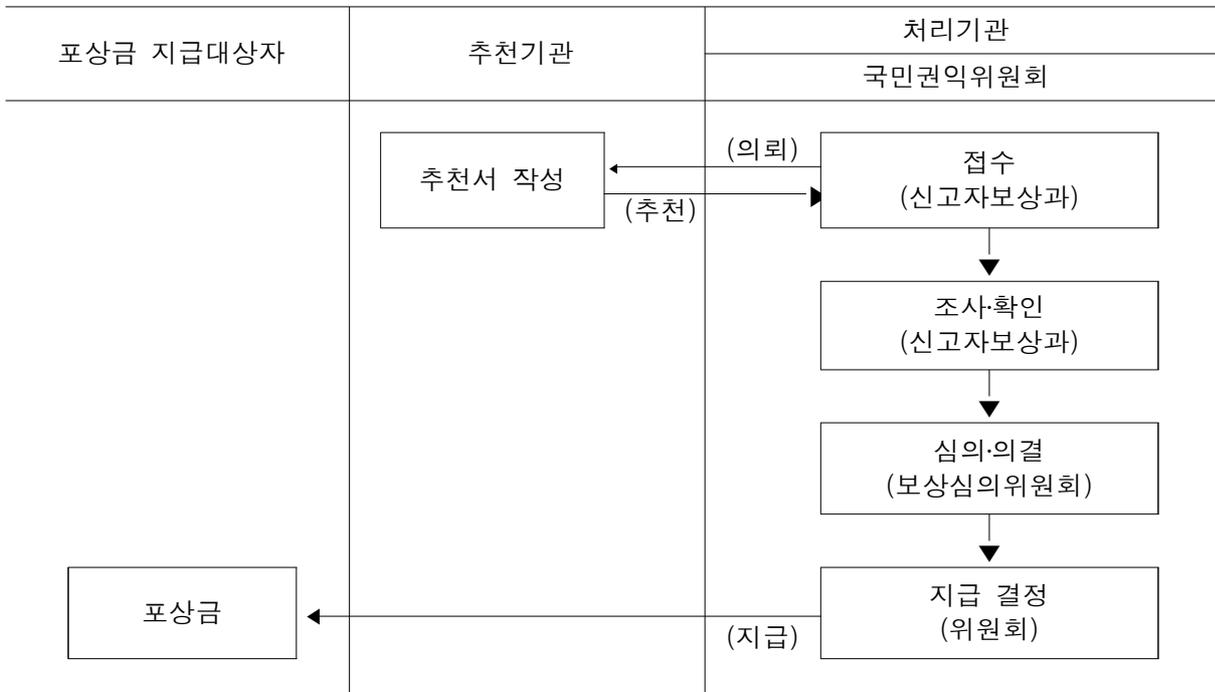
※ 구비서류

1. 주민등록증 등 포상금 지급대상자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사본
2. 신고 및 조사 등에 관한 자료 사본
3. 그 밖에 포상금 지급 결정 등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서류

※ 작성요령

1. ① 란에는 포상금 지급대상자를 추천하는 기관의 기관명, 소관부서명, 담당자 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2. ② 란에는 추천하는 포상금 지급대상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우편물을 받으실 수 있는 주소 및 소속과 직업을 기재하고, 내부 공익신고자인지 외부공익신고자인지 해당되는 항목의 []에 ✓를 표시합니다. 또한, 제22조제2항에 따라 당사자에게 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 사실을 미리 알리고 동의를 구하였음을 []에 ✓를 표시합니다.
3. ③ 란에는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추천하는 사유를 6하 원칙에 따라 간략히 기재합니다.
4. ④ 란에는 신청인이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기관명, 공익신고일자와 신고내용의 요지, 공익신고를 처리한 조사기관 및 수사기관과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짜, 처리결과의 요지를 기재합니다.
5. ⑤ 란에는 신청인이 동일한 공익신고를 이유로 이 법령 또는 다른 법령 상의 보상금 또는 포상금을 청구하거나 수령한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되는 항목의 []에 ✓를 표시합니다.
6. ⑥ 란에는 추천기관의 소관 부서장의 직위와 이름을 기재하고, 관인을 날인합니다. 다만, 동 추천서를 추천기관의 관인이 날인된 공문서에 첨부하여 제출할 경우에는 (인)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이 추천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 및 국민권익위원회 조직개편에 따른 일부 서식을 정비하여 공익신고가 적정하고 원활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공익신고자의 보호·보상제도 운영 안내문이 변경됨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여 정비함(별지 제7호서식).
- 공익신고 사항 처리절차 유의사항을 정비함(별지 제8호서식).
- 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서를 정비함(별지 제10호서식).

도시계획시설사업(송촌동 상점가 공영주차 전용빌딩 건립공사) 실시계획인가 고시

1. 대전광역시 대덕구 송촌동 458번지 상 도시계획시설사업(송촌동 상점가 공영주차 전용빌딩 건립공사)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대덕구청(건축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여드립니다.

2018년 12월 31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 가. 사업시행지 위치 : 대전광역시 대덕구 송촌동 458번지
 나. 사업종류 및 명칭 : 송촌동 상점가 공영주차 전용빌딩 건립공사
 다. 사업의 면적 및 규모
 ◆ 부지면적 : 2,146.8㎡
 ◆ 용 도 :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 층 수 : 지하3/지상1층
 ◆ 연 면 적 : 6,018.27㎡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대덕구청장
 ◆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오정동)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인가고시일 ~ 2020. 12. 31.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연번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대장면적	편입면적		
1	송촌동 458	대	2,146.8	2,146.8	대전광역시	
총계	1필지		2,146.8	2,146.8		

- 사.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아. 관계도서 : 게재생략

도시계획시설사업(한남학생창업클러스터 공사) 공사완료 공고

1. 대전광역시 대덕구 오정동 133 외 31필지 상 도시계획시설사업(한남학생 창업클러스터 공사)에 대하여 공사완료 하였기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관계도서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건축과(☎ 042-608-5152)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8년 12월 31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 가. 사업시행지 위치 : 대전광역시 대덕구 오정동 133 외 31필지
- 나. 사업종류 및 명칭 : 한남학생창업클러스터 공사
- 다.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 부지면적 : 416,275.0m²
 - 연 면 적 : 기존 181,288.09m², 증축 1,443.49m², 철거 285.12m²,
계 182,446.46m²
-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학교법인 대전기독교학원 이사장 이성희
 -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한남로 70(오정동)
- 마. 사업시행기간 : 2018. 2. 2. ~ 2018. 12. 15.
- 바. 관계도서 : 게재생략